

---

## 법인세 신고 안내자료

---

### □ 홍보 및 협조안내 사항

#### < 법인세 신고 관련 >

- (신고도움서비스 개선) 올해는 지난해 보다 개별 분석자료, 절세 도움말, 업종별 유의사항 등 신고도움자료를 확대하였음
  - \* 개별분석 : 67개(25년) → 71개(26년) / 공통분석 : 56개(25년) → 58개(26년)
- 세무조사 적출사례, 소득부인자료 신청 내역이 있는 법인, 창업 중소기업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였음
- 특히, 법인카드 전통시장 사용분을 핵심 절세 도움말 자료로 제공하였으니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계산 시 참고하시기 바람
-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, 공제·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혐의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니 신고도움자료를 반드시 확인 후 신고해 주기 바람
- (모바일 안내) 개별분석자료가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표자의 휴대폰으로 신고도움자료의 주요 항목을 안내(3.3.)하였음
  - 대표자가 신고도움자료를 직접 열람함에 따라 세무대리인에게 도움자료와 관련하여 문의할 수 있으니
  - 세무사님들이 이미 검토하고 계신 내용은 직접 상담을 해주시고, 추가 문의사항은 안내된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

- (자주하는 실수) 지난해 신고내용 확인 결과 상시근로자 수 계산 착오 등으로 세액공제·감면을 과다하게 받거나, 법인보유 자산을 사주일가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계산을 누락하여 추정되는 사례가 많았음
-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거나 공제·감면을 과다신고하는 경우 당초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신고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람

### | 자주 하는 실수 Top 5 |

#### 【유형①】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다공제

- 수도권에 소재하는 중기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에 특별세액감면을 부당하게 적용한 사례

#### 【유형②】 고용증대세액공제 과다공제

- 수도권 밖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수도권 내 소재하고 있는 지점의 상시근로자를 수도권 밖 세액공제액을 적용하여 과다 공제받은 사례

#### 【유형③】 비상주 공유오피스를 이용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부당 공제

-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가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공유오피스를 임차한 후 사업자등록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당하게 적용한 사례

#### 【유형④】 법인 소유 주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

- 직원 사택 등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대표이사 또는 최대 주주의 가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계산을 누락한 사례

#### 【유형⑤】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부당공제

- 고가 승용차, 캠핑카를 법인 명의로 취득하고 사주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전액 비용처리하여 법인세 탈루한 사례

### < 법인세 경정청구 관련 >

- (홈택스 경정청구 개선)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법인세 경정청구 메뉴를 이전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\*하였음

\* 홈택스>세금신고>법인세신고(정기, 중간예납, 경정청구) 또는 검색창에 '경정청구' 입력

- 홈택스 접수는 업무처리 절차가 전산화 되어 우편접수보다 경정청구 처리(환급)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람

## < 연구개발지원 관련 >

- (R&D 세액공제) 올해는 R&D 공제대상 범위가 대폭 확대\*되고, 기업 규모 및 기술 유형에 따라 최대 50%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한 제도이나, 잘못 적용하는 경우 공제세액과 함께 가산세까지 부담하여야 함

\* 국가전략기술 등의 근무시간이 50% 초과 시 인건비 안분 적용, 연구용 클라우드 이용료 등

- 지난해 R&D 세액공제 사후관리 시 주식 10% 초과 보유한 주주인 임원 인건비,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 등에 대해 세액 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으니 이번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

### I R&D 세액공제 잘못 적용한 주요 사례 I

#### 【사례①】 주식 10% 초과 보유한 주주인 임원 인건비 공제 적용

- 연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10%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이고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비용에 해당함

#### 【사례②】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 공제 적용

- 정부지원과제를 수행하면서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금액은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비용에 해당함

#### 【사례③】 연구소·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되었으나 공제 적용

- 연구소·전담부서가 인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 사유별로 세액공제 제외하는 시기가 다름에도 취소일 이후의 비용만 세액공제 제외하여 과다 공제 받음

\* (거짓 신고) 인정 과세연도 개시일 (준수사항 위반 보완명령 미이행) 인정취소 과세연도 개시일 (자진취소등) 인정 취소일

- (사전심사·컨설팅) 국세청에서 R&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·감면 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세무사회 차원의 홍보를 부탁드립니다

## < 연말정산 관련 >

- (일괄제공)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\*는 기업이 연말정산 신고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효과가 있음

\*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나 세무대리인에게 직접 제공

- 다만,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, 현재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사업자는 전체 기업(119만개) 중 6.7%에 불과한 상황임
- 회사 담당자가 홈택스에서 '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'를 체크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도 이용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,
- 동시에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도 홍보 부탁드립니다

### (회사용) 일괄제공 신청/관리

- 일괄제공 신청 대상 근로자 명단은 **2025.04.03. ~ 2026.01.10.** 까지 등록하셔야 해요. 기한이 지나면 등록할 수가 없으니 주의해 주세요.
- 일괄제공 받는 일자 는 **2026.01.20.만 선택(변경)**할 수 있습니다.
- 일괄제공을 신청한 회사가 많으면, 회사가 선택한 날짜보다 1~2일 뒤에 파일이 제공될 수 있어요.

사업자등록번호 : **101-82-42933** , 상호(법인명) : **다침완선 공어용영신우감도**

* 업무 담당자 성명 이하나	* 업무 담당자 연락처 010 - - 연락처 앞 3~4자리	* 파일 비밀번호(숫자4자리) ?
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? <input type="radio"/> 미동의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동의 <b>세무대리인 확인</b>		일괄제공 받는 일자 ? <input type="radio"/> 2026.01.17.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2026.01.20. (최종분)